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오세희 · 이성윤 · 장철민
이광희 · 강준현 · 김한규
이강일 · 박해철 · 권향엽
강경숙 · 민병덕 · 김재원
김현정 · 복기왕 · 안도걸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·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·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,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

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).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온라인서비스제공자”란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, 인도 또는 양도·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제6장에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8조의2(디자인권·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모니터링) ① 지식재산처장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(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) 상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

에게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의 삭제, 접속경로의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8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특별사법경찰관리(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8호의2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)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제2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로 한다.

① 제1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“온라인서비스제공자”란 정 <u>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</u> <u>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</u> <u>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</u> <u>통하여 상품의 양도, 인도 또</u> <u>는 양도·인도 목적의 전시</u> <u>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</u> <u>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</u> <u>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</u> <u>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</u> <u>한다.</u> 제118조의2(디자인권 · 전용 실시 <u>권의 침해행위 모니터링) ①</u> <u>지식재산처장은 「전자상거래</u> <u>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온라인</u> <u>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</u> <u>버물(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</u> <u>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</u>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) 상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의 삭제, 접속경로의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8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② 특별사법경찰관리(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

제229조(과태료) <신 설>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·징수한다.	<u>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8호의2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)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제2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229조(과태료) ① 제1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